

定 款

재단법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정 2025. 12. 2〉

제정 2020. 8.21.
개정 2021. 9. 8. (1차, 2021년 2차 이사회)
개정 2022. 7.12. (2차, 2022년 2차 이사회)
개정 2022. 9.22. (3차, 2022년 3차 이사회)
개정 2022.11.28. (4차, 2022년 4차 이사회)
개정 2023. 3.28. (5차, 2023년 1차 이사회)
개정 2023. 8.30. (6차, 2023년 2차 이사회)
개정 2024. 3.25. (7차, 2024년 1차 이사회)
개정 2025. 3.25. (8차, 2025년 1차 이사회)
개정 2025.12. 2. (9차, 2025년 2차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국문으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 Korea Research Institute of Decommissioning (영문약어는 “KRID” 라고 한다)로 표기한다. <개정 2023. 3.28.>

제2조 (목적)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령” 이라 한다)에 따라 원전해체분야 기술 자립을 주도하는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효과적인 해체 수행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바지하고 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국민안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해체 관련 기술·장비의 실증 및 신규 개발
2. 원전해체기술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원전해체 관련 축적된 실증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국내외 기술협력 지원
4.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
5. 원전해체기술 및 기술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부대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3.25.>

1. 원전 및 원전해체 기술, 폐기물 등 이공학 계열과 관련한 시험·분석, 평가인증, 표준화사업
2. 제4조 제1항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기술용역 또는 관련 사업의 수탁 및 위탁사업
3. 제4조 제1항 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사업
4. 제4조 제1항의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수익사업

③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 사항은 공익법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④ 제3항의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5조(수혜자) ① 법인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는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②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성별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17명(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8.>
4. 감사 2명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7.12.>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재임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5.12.2.>

②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자는 해당 소속 임직원으로서 이사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무국장 <개정 2025.12.2.>
2. 부산광역시 담당 실·국장

3. 울산광역시 담당 실·국장
4. 경상북도 담당 실·국장
5. 경주시 담당 실·국장
6.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7. <삭 제> <개정 2022. 7.12.>
8. 한전KPS(주) 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10.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장(상임이사) <신설 2022.11.28.>, <개정 2023. 3.28.>
11.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사후관리 담당 임원 <신설 2022.11.28.>

③ 새로운 임원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④ 당연직 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이사(이하 “추천이사”라 한다)는 법인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연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각 출연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이사의 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8. 2022. 7.12.>

⑤ 공익법인법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6. 민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7. 기타 신체 및 정신상의 결격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원이 제11조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장의 직을 수행하며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 7.12.>, <개정 2023. 3.28.>, <개정 2023. 8.30.>

② 상임이사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장으로서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약을 이사장과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12.>, <개정 2023. 3.28.>

③ 이사장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개정 2022. 7.12.>, <개정 2023. 3.28.>

④ 이사장은 제2항에 의한 경영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7.12.>

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23. 8.30.>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법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법령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공익법인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30.>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25.12.2.>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6.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제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 심의의결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단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소속 직원 중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결위된 때에는 출석이사 과반수 지명을 받은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30>

② (삭제)

③ 이사장이 결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상임이사가 유고 또는 결위된 때에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직제순위에 따라 차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상임이사 선임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 8.30>

제16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상임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회기)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 1회 개최하되, 임시 이사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25.12.2.>

4. 상임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23. 3.28.>, <개정 2023. 8.30.>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제15조에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 사업 및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그 밖의 공익법인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 1인이더라도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 ① 사업의 수행 및 기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원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 3.28.>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7.12.>

④ 재단법인 운영, 재산관리, 이사회 운영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 2(임직원의 겸직제한)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그 밖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2. 11.28.>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2.>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법인의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와 같다.

제27조(기본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 중에서 현금은 우체국, 은행에 예금 및 신탁, 또는 국채,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환금하여 보관한다.

제28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공익법인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5.12.2.>

② 법인은 공익법인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보고한다. <개정 2025.12.2.>

제31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5.12.2.>

제34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법령’, ‘민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

제36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7조(공고방법)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포함한 결산 서류를 공고한다.

제38조(기부금 모금실적의 공개) ①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②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법인의 설립 이전에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포함)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된 사무국 조직 및 운영과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 9. 8.>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7.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임된 상임이사는 제8조 제2항 제7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9.22.>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1.28.>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3.28.>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8.30.>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3. 25.>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3. 25.>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12. 2.>

이 정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개정 2021. 9. 8>. <개정 2022. 9.22.>. <개정 2025. 3.25.>

1. 현금

금액 : 금6,400,000,000원

출 연 자	재산구분	평가액
한국수력원자력(주)	현금	3,605,000,000원
한전KPS(주)	현금	2,295,000,000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현금	300,000,000원
한국전력기술(주)	현금	200,000,000원

2. 부동산

구분	지 번	용도	면적(m ²)	평가액
토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2	임	10,784.0	1,455,840,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3	임	2,975.0	296,012,5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4	임	9,421.0	1,106,967,5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5	임	13,554.0	1,782,351,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6	임	472.0	65,844,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42-1	답	7.0	2,635,5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45	답	4.0	1,506,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46	답	2,172.0	697,212,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46-1	답	1,924.0	724,386,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47	답	119.0	38,199,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48	답	231.0	74,151,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49	답	2,583.0	972,499,5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50	답	52.0	19,578,000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404	구	315.0	39,060,000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3	임	60,876.7	7,575,811,600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4-2	장	31,917.3	8,381,852,400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7-1	도	104.5	14,771,000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7-2	도	442.5	79,838,000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6-1	도	80.0	8,40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5-1	구	105.0	6,877,5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59-77	대	980.0	396,907,7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27	전	1,330.0	131,67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28	전	200.0	19,40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29	전	635.0	62,865,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0	전	2,377.0	235,323,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1	전	605.0	59,895,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2	전	390.0	38,61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3	전	674.0	66,726,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4	전	1,061.0	105,039,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5	전	56.0	5,544,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6	전	1,120.0	151,20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7	전	4,978.0	672,03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3	전	1,679.0	169,579,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4	전	316.0	31,284,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5	전	595.0	58,905,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6	전	2,179.0	215,721,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7	전	2,483.0	245,817,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27-1	구	85.0	5,567,5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28-1	구	188.0	12,314,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28-2	전	1,434.0	141,966,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28-3	구	26.0	1,703,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5-2	전	31.0	3,069,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6-1	제	119.0	11,77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6-2	구	8.0	524,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6-3	구	12.0	786,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7-1	구	164.0	13,776,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37-2	전	551.0	54,549,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4-1	구	6.0	47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4-2	구	149.0	11,65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4-3	전	799.0	79,101,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4-4	전	753.0	89,080,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5-1	구	30.0	1,965,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6-1	구	165.0	10,807,5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447-1	구	96.0	6,288,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59-126	답	1,111.0	203,313,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59-76	답	1,971.0	360,693,000원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59-78	구	46.0	6,831,000원
합 계			167,541	27,026,531,200원

설립 발기인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날인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인감)
한 전 K P S (주)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인감)
한전원자력연료(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인감)
한국전력기술(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인감)